

#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867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6년 3월 4일  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중앙정부, 자치구, 민간단체 등과의 원활한 협의 등을 위하여 보완함.

## 2. 주요내용

- 안 제9조 중 “구축하여야 한다.”를 “구축할 수 있다.”로 수정함.

#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 중 “구축하여야 한다.”를 “구축할 수 있다.” 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자치구 및 웹접근성 관련 전문기관·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<u>구축하여야 한다.</u>	제9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자치구 및 웹접근성 관련 전문기관·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<u>구축할 수 있다.</u>

##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정보취약계층”이란 장애인·고령자 등 신체적·사회적·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.
2. “정보격차”란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9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.
3. “웹접근성”이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는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,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해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」 제5조의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.

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
2.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
3.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

4.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매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웹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 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웹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추진사업)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

2.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

3.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 홍보

4.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7조(교육 및 홍보)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)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를 둔다.

1.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2.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「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가

심의한다. 이 경우 서울특별시정보화전략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로 본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자치구 및 웹접근성 관련 전문기관·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0조(위탁)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웹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1조(포상)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·단체 등을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